

# 부경대학교 학칙

개정 2005. 8. 1. 규정 제422호 개정 2009. 10. 21. 규정 제600호 개정 2013. 9. 11. 규정 제752호 개정 2016. 12. 28. 규정 제906호  
개정 2005. 10. 1. 규정 제429호 개정 2009. 12. 18. 규정 제602호 개정 2013. 11. 20. 규정 제757호 개정 2017. 2. 28. 규정 제929호  
개정 2005. 11. 25. 규정 제446호 개정 2010. 2. 23. 규정 제607호 개정 2013. 12. 19. 규정 제761호 개정 2017. 6. 1. 규정 제936호  
개정 2006. 3. 30. 규정 제464호 개정 2010. 4. 14. 규정 제620호 개정 2014. 2. 28. 규정 제773호 개정 2017. 7. 10. 규정 제942호  
개정 2006. 6. 22. 규정 제469호 개정 2010. 6. 1. 규정 제626호 개정 2014. 6. 23. 규정 제785호 개정 2017. 10. 17. 규정 제954호  
개정 2006. 8. 1. 규정 제471호 개정 2010. 7. 19. 규정 제632호 개정 2014. 7. 9. 규정 제788호 개정 2018. 1. 5. 규정 제966호  
개정 2006. 9. 1. 규정 제473호 개정 2010. 9. 15. 규정 제638호 개정 2014. 9. 26. 규정 제794호 개정 2018. 6. 1. 규정 제979호  
개정 2006. 10. 1. 규정 제482호 개정 2010. 12. 6. 규정 제646호 개정 2014. 12. 30. 규정 제800호 개정 2018. 7. 23. 규정 제984호  
개정 2006. 12. 1. 규정 제487호 개정 2011. 1. 7. 규정 제651호 개정 2015. 3. 16. 규정 제807호 개정 2018. 8. 3. 규정 제991호  
개정 2007. 1. 16. 규정 제489호 개정 2011. 6. 3. 규정 제660호 개정 2015. 4. 30. 규정 제821호 개정 2018. 9. 14. 규정 제992호  
개정 2007. 2. 6. 규정 제492호 개정 2011. 8. 23. 규정 제664호 개정 2015. 6. 17. 규정 제824호 개정 2018. 10. 16. 규정 제994호  
개정 2007. 3. 30. 규정 제499호 개정 2012. 2. 3. 규정 제675호 개정 2015. 10. 5. 규정 제832호 개정 2018. 11. 14. 규정 제998호  
개정 2007. 8. 2. 규정 제511호 개정 2012. 3. 12. 규정 제679호 개정 2015. 11. 13. 규정 제859호 개정 2018. 11. 27. 규정 제1001호  
개정 2008. 2. 20. 규정 제532호 개정 2012. 3. 30. 규정 제680호 개정 2015. 12. 23. 규정 제870호 개정 2019. 1. 17. 규정 제1007호  
개정 2008. 4. 17. 규정 제539호 개정 2012. 7. 20. 규정 제684호 개정 2016. 3. 31. 규정 제875호 개정 2019. 2. 14. 규정 제1013호  
개정 2008. 10. 1. 규정 제551호 개정 2012. 9. 1. 규정 제689호 개정 2016. 5. 23. 규정 제885호 개정 2019. 2. 28. 규정 제1018호  
개정 2008. 12. 30. 규정 제564호 개정 2012. 12. 31. 규정 제707호 개정 2016. 7. 5. 규정 제891호 개정 2019. 5. 7. 규정 제1025호  
개정 2009. 4. 1. 규정 제575호 개정 2013. 2. 12. 규정 제715호 개정 2016. 10. 17. 규정 제899호 개정 2019. 6. 21. 규정 제1033호  
개정 2009. 8. 7. 규정 제595호 개정 2013. 4. 10. 규정 제732호 개정 2016. 11. 4. 규정 제901호 개정 2019. 08. 01. 규정 제1034호  
개정 2009. 9. 2. 규정 제598호 개정 2013. 8. 21. 규정 제750호 개정 2016. 12. 1. 규정 제904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부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조직,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교의 교육목적은 학문의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연구·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 인류의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해 나갈 열린 사고와 책임있고 실천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개정 2018.6.1.>

## 제2장 대학조직

### 제1절 교육조직

**제3조(편제)** ① 본교에는 단과대학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수산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 미래융합대학을 두고,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는 글로벌자율전공학부를 둔다. <개정 2014.2.28., 2016.7.5., 2017.7.10.>

② 본교에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두고, 전문대학원으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수 대학원으로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글로벌정책대학원, 글로벌수산대학원 및 세계수산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3.2.12., 2013.11.20., 2015.12.23., 2017.2.28., 2019.2.28., 2019.5.7.>

③ 본교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부.학과(이하 “학부(과)”라 한다)를 두고, 학부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 수 있다.

④ 세계수산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2.28.>

**제4조(학위과정의 설치 등)** ① 본교의 단과대학에 학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특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개정 2013.11.20., 2015.12.23.>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학부(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부(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5.>

③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 및 양성과정을 둘 수 있다.

④ 학사 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계약에 의한 학부(과)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부(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② 학사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및 학위수여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1.13.>

③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와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본교의 전임교원은 대학(원), 학부(과), 부속

시설 및 연구시설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본교 산하 조직 또는 사업단 등에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18.1.5., 개정 2019.8.1.>

②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제6조(학장.부학장.학부장 등)** ① 각 단과대학에 학장 및 부학장, 대학원에 원장 및 부원장을 두며, 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부학(원)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3.2.12.>

②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학부(과)에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을 둘 수 있으며,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전임교원 중에서 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2.>

③ 단과대학의 학부(과)장은 대학원의 전공주임을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 학부장을 두며, 학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2.28.>

**제7조(겸임교원 등)** ① 본교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석좌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3., 개정 2019.8.1.>

② 겸임교원 등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절 행정조직

**제8조(총장 및 부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하되, 세부사항은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3.30.>

③ 본교에 학무부총장과 산학부총장을 둔다.<개정 2018.8.3.>

④ 부총장은 관련되는 부서의 주요 정책을 관장하고, 아래 각 호의 업무와 그 밖의 총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18.8.3.>

1. 학무부총장: 대학 교육의 선진화 및 학사 등에 관한 업무

2. 산학부총장: 용당캠퍼스의 체계적 관리, 산학협력 및 연구진흥 등에 관한 업무

⑤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무부총장, 산학부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등 교무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8.3.>

**제8조의2(본부조직)** ① 본교에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며, 각 처장, 부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무처에는 교무과, 학사관리과를 둔다.

③ 학생처에는 학생복지과를 둔다.

④ 기획처에는 기획과, 대외협력과를 둔다.

⑤ 사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⑥ <삭제 2016.12.28.>

**제8조의3(입학본부)** ① 학생의 선발, 대학입시홍보 및 입학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학본부를 둔다. <개정 2016.12.28.>

② 입학본부에는 입학관리과를 두고 본부장 및 부분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1.8.23., 2014.9.26.> <개정 2016.12.28.>

③ <삭제 2016.12.28.>

**제8조의4(국제교류본부)** ① 국제화 및 외국인 유학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제교류본부를 둔다.

② 국제교류본부에는 국제교류부, 글로벌어학교육센터, 글로벌코리안교육센터를 두고 본부장 및 부분부장, 센터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6.12.28.>

③ <삭제 2016.12.28.>

**제9조(단과대학 행정실 등)** ① 단과대학에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16.12.28.>

② (삭제)

③ <삭제 2016.12.28.>

**제10조(산학협력단)** ①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 및 부단장을 두며, 본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12.>

③ 산학협력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의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6.12.28.>

**제10조의2(신산학융합본부)** ① 신산학협력 및 취·창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산학융합본부를 둔다.<신설 2017.6.1.>

② 신산학융합본부에는 신산학개발원(미래산학융합교육센터, 산학협력확산센터) 및 인재개발원(취·창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을 두고, 본부장 및 각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신설 2017.6.1.>

**제10조의3(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②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절 부속시설 등

**제11조(부속시설 등)** ① 본교에 지원시설로서 정보전산원, 학생생활관을 둔다. <개정 2016.5.23.>

② 본교에 부속시설로서 학생상담센터, 기초교양교육원(교양교육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이러닝지원센터), 공동실험실습관, 박물관, 기록관, 교육연수원, 보건진료소, 부경언론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체육부,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예비군연대, 사회봉사리더십센터, 안전관리센터, 직장어린이집, 성평등인권센터를 둔다. <개정 2013.9.11., 2014.2.28., 2014.6.23., 2015.4.30., 2015.11.13., 2016.7.5., 2016.12.28. 2017.6.1., 2018.7.23.>

③ 단과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경영대학 : 경영교육혁신센터
2. 공과대학 : 공학종합실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3. 수산과학대학 : 수.해양종합실습센터, 선박실습운영센터, 실습선 및 탐사선, 수산질병관리원
4. 환경.해양대학 : 해양탐구교육원
5. 미래융합대학 : 평생교육원<신설 2016.7.5.> <개정 2017.7.10.>

④ 본교의 연구시설로서 인문사회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경영연구원, 공학연구원, 수산과학연구원, 환경.해양과학기술연구원을 두며, 연구원에는 연구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제1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원에 연구소 또는 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8.1.5.>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지원시설,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에 장을 두며, 관련 단과대학, 학부(과)의 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23.>

⑥ 삭제 <개정 2016.5.23.>

⑦ 정보전산원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⑧ <삭제 2016.12.28.>

⑨ 지원시설,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5.23.>

⑩ 제2항 내지 제4항의 부속시설(박물관, 기록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다)과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4.30., 2015.11.13., 2018.1.5.>

⑪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사업단(센터) 등의 부속시설은 총장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학생군사교육단)** ① 본교에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신설 2010.9.15>

② 학생군사교육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9.15.>

**제11조의3(도서관)** ① 본교에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도서관을 두고, 관장은 교수로 겸보한다.

② 도서관에 학술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6.12.28.>

③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관 시설, 직원, 자료의 기준 등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이상을 확보한다.

④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3.]>

#### 제4절 교수회 및 각종위원회 등

**제12조(전체교수회)**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를 두며, 본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0., 2013.2.12.>

②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 한다.

③ 전체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체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부의한 사항

2. 재적교수 4분의 1 이상이 서면 요청으로 부의한 사항

**제12조의2(교수회)** ①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12.31.>

**제13조(단과대학교수회)** ①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단과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각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20., 2013.2.12.>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교수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도 소집해야 한다.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연구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장학, 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학칙 및 제규정의 제·개정 발의
5.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및 평의회회 평의원의 추천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교무회)** ① 본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② 교무회는 총장, 학무부총장, 산학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입학본부장, 국제교류본부장, 신산학융합본부장, 도서관장 및 정보전산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7.6.1., 2018.8.3.>

③ 교무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조정과 부속시설의 설·폐에 관한 사항
3.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학생지도 및 후생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연구비·장학금 기타 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 9. 대학 및 대학원간 조정을 요하는 사항
-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의원회)** 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칙 및 기타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한 사항
- 6.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8.1.>

- ③ 평의원회는 총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재심의 하면 그 안건은 평의원회의 심의로써 확정된다.
- ④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기획위원회)** ①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서 기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28.>

- ②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제17조(대학인사위원회)** ① 전임교원 및 강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1.>

- ② 대학인사위원회는 각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되, 위원 중 100분의 20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 ③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9.15>
  - 1.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임용제청 또는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0>
  - 2.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의 보직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15>
  - 3. 강사의 위촉(임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
  -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



⑤ 대학인사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및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2.12.>

③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부(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다양한 운영과 자격기준 설정 및 전형관리 등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교무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부위원장은 학무부총장이 된다. <개정 2011.1.7., 2012.7.20., 2013.2.12., 2018.8.3.>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③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학술연구진흥위원회)** ① 학술연구 및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생장학지도위원회)** ① 장학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장학지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3>

②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전임교원 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2(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 ① 대학의 국제화 역량강화에 관한 총장의 자문기구로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를 둔다.

②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의3(대학자체평가위원회)**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실시하는 자체평가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 등의 운영 및 자체평가의 시기·영역·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의4(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책정을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1.7>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7>

**제25조(각종위원회 등)** ① 본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4조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에 각종위원회 또는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각종위원회 등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의2(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① 도서관 예산, 발전계획 등 대학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도서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3.]

**제25조의3(팀제 운영)** ① 교육조직, 행정조직, 부속시설 등의 각 과(실, 부, 센터 등)에는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장 학사운영

### 제1절 학사일반

**제26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 나눈다.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하기 및 동기 휴가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도를 4개 학기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외국인 학생에 대해 집중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6.1.>

**제27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와 공과대학 건축학과 재적생,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7., 2018.1.5.>

③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6개월,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2.12.>

④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사과정 3년 6개월, 석사과정은 1년 6개월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의 학사과정 수업연한은 4년 6개월로 한다. <개정 2015.6.17.>

⑤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세계수산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9.14.>

**제28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공과대학 건축학과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자는 잔여 수업연한의 2배로 하며, 미래융합대학 학사과정과 융합(공유)전공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7., 2016.7.5., 2017.7.10., 2018.9.14.>

② 대학원과정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학.석사 연계과정은 10년(공과대학 건축학과는 1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17.>

③ 전과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④ 재외국민, 외국인 및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8.6.1.>

② 제26조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당 15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6.1.>

③ 축제 등 학생행사 기간과 계절수업은 수업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6조 제3항에 따라 3개 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학기당 최소 4주 이상으로 학기별로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18.6.1.>

④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무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18.6.1.>

[전문개정 2018.1.5.]

**제30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 수업 또는 현장실습 수업, 온·오프라인 혼합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8.1.5., 2018.11.14.>

② 방송·통신 수업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며, 강의대상과목과 수강인원은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 하기 및 동기 휴가기간으로 한다.

② 하기 및 동기휴가기간과 임시휴업일은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 제2절 입학 및 등록

**제32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은 학부, 학과 또는 학과군(이하 “모집단위”라 한다)으로 모집하며, 입학정원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학부 또는 학과군으로 모집한 학생은 전공 또는 학과가 결정될 때까지 학부·학과군으로 통합 운영하며, 학생의 전공 또는 학과배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학년의 학점 취득이 불가능한 재적생은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원관리, 허용범위,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모집단위를 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정원 외 입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 학생 등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제33조의2(위탁학생)** 각 대학원은 기업체 등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3.2.12.><단서삭제 2014.9.26.>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6조(대학원과정 지원)** ① 석사과정의 지원 전공학부(과)는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의 지원 전공학부(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동일

계열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부(과)와 동일계열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 학부(과) 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학사과정 편입학)** ① 편입학은 제3학년에 한하며, 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학년의 직전학기까지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한하여 정원 외로 학사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4% 이내, 제3학년 총 입학정원의 2%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9.>

③ 본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는 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단,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연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6.>

**제37조의2(일반대학원 편입학)** 일반대학원의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시기 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제38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총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총 정원은 주간과 야간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은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13.2.12., 2018.1.5.>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전의 취득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③ 재입학 허가시 모집단위와 학년인정은 제적당시와 같은 모집단위 및 학년으로 한다.

④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 분리, 통.폐합 및 명칭 변경된 경우라도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제39조(학생선발방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 및 성적반영비율, 전형일자, 전형료,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16.>

**제40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원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41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의2(학적부 생성 및 관리)** ① 관련 부서에서는 학생의 학적부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수속이 완료됨과 동시에 생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② 학적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와 이수과목을 신청함으로써 등록한다. <개정 2011.1.7., 2018.1.5.>

### 제3절 학적관리

**제43조(전과 또는 전공변경 범위 등)** ① 학사과정의 전과 또는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계열 구분 없이 허용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경우 같은 단과대학에서만 허용되며, 융합(공유)전공은 전과(전입·전출)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2017.2.28.> <개정 2017.7.10., 2018.9.14.>

② 전과시기는 2학년 이상 매 학기초로 한다.<개정 2017.7.10.>

③ 전과인원은 전출·전입학부(과)의 모집단위에서 정한 기준정원의 20% 이내로 하고, 사범계학과로 전과할 수 있는 인원은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한 인원에만 한하며, 간호학과와 글로벌자율전공학부로는 전입할 수 없다. <개정 2013.2.12., 2014.2.28., 2014.6.23.>

④ 주·야간 전과에 대한 허용범위 및 전과인원 산정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⑤ 일반대학원의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는 계열구분 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국책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1.5., 2019.8.1.>

**제44조(전과 자격 및 절차)**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원서에 소속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미 이수한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확인서를 첨부하여 매 학기 개시 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5.>

**제45조(전과한 학생의 이수과목)** 전과한 학생은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전입

학과의 전공필수과목, 전공공통과목 및 학문기초교양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전입학과의 졸업 및 전공과목 학점은 제64조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2013.4.10.>

**제46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실시 전에 그 휴학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휴학원과 함께 제출하여 허가받을 수 있고, 육아를 사유로 휴학할 경우 자녀가 만 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개정 2013.2.12., 2013.12.19., 2014.9.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 학기는 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 <개정 2013.2.12.>

**제47조(휴학기간 및 연장 등)** ① 학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 이내로 하고,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원과정의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4개 학기를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을 위한 휴학과 1년 이상의 외국유학(해외파견) 및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2.12., 2013.12.19., 2018.1.5.>

② 휴학중인 자가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기간연장 신청을 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자 중 휴학기간 자동연장을 선택한 자는 휴학연장 신청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2017.7.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합(공유)전공은 휴학기간의 제한이 없다.<신설 2018.9.14.>

**제48조(복학)** ① 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입대휴학을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9.>

**제4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12.>

**제5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학 하지 아니한 자
2. 재학연한 초과자
3. 등록금 납부 및 등록을 소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 <개정 2011.1.7.>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받은 자 <개정 2014.6.23.>



5. 타 대학(원)에 입학한 자
6.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51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교직과목 및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2조(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체육, 논문연구 및 세미나 기타 교육과정이 정하는 과목의 이수시간은 매 학기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5.>

**제53조(학사과정의 학점 신청 및 이수 변경)** ① 매 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부(과)는 18학점 이내, 140학점인 학부(과)는 2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최소 신청학점을 9학점(졸업 소요 잔여 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6.7.5., 2017.2.28., 2017.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추가신청 및 이수할 수 있으며, 직전학기 미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학점까지 추가신청 및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2017.2.28., 2017.7.10., 2018.6.1.>

③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수과목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미 신청된 이수과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변경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대학원과정의 학점 신청 및 이수)** 매 학기 신청 및 이수 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제55조(타 대학 및 기관 등 이수 학점)**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2. 고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개정 2018.1.5.>

3.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군복무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개정 2013.2.12., 2018.1.5.>

4. 군입대 휴학중인 자가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5. 미래융합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전·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정한 학점 <신설 2016.7.5., 2017.7.10.>

② 제1항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해외복수학위취득을 위한 경우는 2분의 1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은 재학 중 15학점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고, 해외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5.>

③ 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6조(선수과목)** ① 대학원 과정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수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7조(수업과목 및 수업시간표)** ① 수업과목은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총장은 매학기에 교수할 수업과목과 수업시간표를 수업 개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당 개강최소인원은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절 시험 및 성적

**제58조(시험)** ①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하는 정기시험,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할 수 있는 임시시험 및 추가시험과 학점취득특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인정과 소속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성적은 B<sup>+</sup>등급 이하로 한다. 다만,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학점취득특별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9조(학점취득 제한)**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졸업 직전 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졸업예정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4>

**제60조(성적)** ① 시험성적, 과제평가, 실기·실험결과,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과 평점을 정한다.

등 급	A <sup>+</sup>	A <sup>o</sup>	B <sup>+</sup>	B <sup>o</sup>	C <sup>+</sup>	C <sup>o</sup>	D <sup>+</sup>	D <sup>o</sup>	F
실 점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0
평 점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0.00

② 학사과정의 교과목 성적은 D<sup>o</sup>등급 이상, 대학원과정의 교과목 성적은 C<sup>o</sup> 등급 이상일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 신청에 의하여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된다. 다만,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 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본인이 재수강과목을 수강취소할 경우에는 그 이전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다고 확인되면 그 성적을 취소한다.

⑤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I"(평가보류)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재이수 신청은 C<sup>+</sup> 이하 성적교과목에 한하며 성적 상한선은 A<sup>o</sup>까지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⑦ 제59조 단서에 따른 취·창업을 한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레포트 평가, 온라인 강의 수강, 시험 등을 통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의 취득성적은 B<sup>+</sup>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4>

**제61조(성적 자율삭제 신청)** 학사과정의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C<sup>+</sup>등급 이하 취득 교과목을 대상으로 재학 중 총 6 학점 이내 총장이 정하는 기간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제62조(학사경고)** ① 학사과정의 경우 매 학기 성적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학사경고 연속 4회 대상자 중 당해학기 이수료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 처분 시 그 사실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2.>

### 제6절 수료 및 졸업

**제63조(학사과정의 수료학점)** 학사과정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학점)

학년수료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 등	33 이상	65 이상	98 이상	130 이상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등	33 이상	66 이상	99 이상	132 이상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학과 등	35 이상	70 이상	105 이상	140 이상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학과 등	35 이상	70 이상	105 이상	150 이상

다만, 건축학과는 제1학년 32학점, 제2학년 64학점, 제3학년 96학점, 제4학년 128학점, 제5학년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2.12.>

**제64조(졸업 및 대학원 수료학점)** ①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부(과)별로 132학점 또는 140학점이상으로 하고, 전 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학과는 160학점 이상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1.1.7., 2013.4.10.>

② 학사과정 교양과목 학점은 교육과정상에 편성된 대학별.모집단위별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전공과목의 학점은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75학점 내지 110학점(건축학과는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7., 2013.2.12.>

③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0학점 이상으로 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8.6.1.>

④ 제3항에 의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학부(과) 또는 유사한 학부(과)에서 이수한 동일과목과 유사과목으로 하되 해당 학부(과) 주임의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6학점 범위에서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수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업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5.>

⑥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의 교과목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공 주임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에서 학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은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5.>

⑦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변경한 자의 전적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부(과) 요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5조(학사과정 부전공 및 복수전공)**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부전공을 이수할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교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학과의 학문기초교양과목을 이수하고,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교과목 중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복수학위 취득과 학부(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학점을 조절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2.>

③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6조(학사과정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등)** ① 다양한 전공선택을 위해 연계전공(교직과정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설계전공, 융합(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을 둔다.<개정 2018.6.1.>

②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융합(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6.1.>

[전문개정 2016. 3. 31.]

[제목개정 2018.6.1.]

**제67조(학사과정 졸업자격인증)** ① 졸업자격인증제는 학부(과)별로 시행한다. <개정 2013.4.10.>

② (삭제) <개정 2013.4.10.>

③ 졸업자격인증제를 시행하는 학부(과)의 재학생은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과를 한 자는 전과한 학부(과)의 졸업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졸업자격인증제는 제1전공에 한하여 적용하며, 부전공 및 제2전공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에 따른 별도의 자격인증을 부과하지 않는다.

⑤ 졸업자격인증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10.>

**제68조(학사과정 편입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 당시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따라 산정하여 66학점 또는 70학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개정 2018.1.5.>

②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학부(과)의 전공공통 및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모집단위에서 정한 75학점 내지 11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제1항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3.4.10.>

③ <삭제 2016.12.28.>

**제68조의2(학사과정 휴학중인 학생의 학점이수)**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학생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범위는 학기당 6학점, 연(年) 12학점 이내로 하고,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29.>

**제69조(졸업, 수료 및 학위수여)** ①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명예박사로 한다.

② 본교에서 정하는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필요한 경우에는 제7호, 제8호의 서식)의 졸업증서에 의거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9.15., 2016.12.28.>

③ 학사과정의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연계전공.복합전공.융합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전공을 병기하여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6.3.31.>

④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부(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해당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이하 “심화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따로 규정한 공학교육인증을 위한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된다. 다만, 교육과정에 명시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각 학부(과).전공은 심화프로그램과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이하 “일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심화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 및 이수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에 학부(과) 또는 전공 명칭 앞에 “심화”를 표기한다. 심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18.1.5.>

⑤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그리고 박사과정 수료자는 제64조 제3항에 정한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⑥ 석.박사 수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⑦ 명예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의2(명예졸업증서 수여)** ① 본교 재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5.>

1.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
2.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본교의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해외복수학위 및 해외공동학위)** ①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체결에 의한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해외복수학위 및 해외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학위등록)** ①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학위수여 예정자별로 학위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학사과정의 학위등록에 있어서 부전공 및 제2전공 이수자는 학위등록번호를 1개로 하되 전공을 병기하며, 하나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72조(학위수여 등의 취소)** 본교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받은 경우와 명예졸업증서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관련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절 시간제 등록생, 학점은행제 및 대학원 연구생

**제73조(자격)** 시간제 등록생은 제35조의 학사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로 한다.

**제74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75조(취득기준학점)**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제53조 제1항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76조(선발방법 등)**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시기, 등록금, 수학연한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7.>

**제77조(학점은행제)**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졸업증서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한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수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5.]

**제78조(대학원 연구생)** ① 대학원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생을 둘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일반연구생

2.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② 연구생의 입학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 .>

③ 일반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 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8절 공개강좌

**제79조(공개강좌)** ① 교양.학술 또는 직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0조(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생활

## 제1절 학생활동

**제81조(학생자치단체)** ① 학생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학생회 등의 학생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2조(시설물 사용)** 학생이 교내의 공용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학생생활지도 등)** ①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학생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하여 상담교수 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학생은 수업 및 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본교의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절 상벌

**제84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 또는 학생장학지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동일한 사유로 징계하여야 할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이 다를 경우에는 학생 장학지도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결정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

④ 징계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절 장애학생 지원 등

**제85조의2(장애학생 지원)** ①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본교에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대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6.3>

# 제5장 등록금 및 장학금

## 제1절 등록 및 등록금

**제86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연액을 확정하여 2기로 나누어 징수하며, 매 학기 등록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 별로 징수하며, 1학점당 등록금액은 당해 학기의 계열별 연간등록금액과 제27조제1항의 수업연한을 곱한 금액을 제64조의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7., 2016.7.5., 2017.7.10.>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③ 분할납부 대상, 횟수, 금액, 징수 기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7조(실험실습비 징수)** 실험실습 및 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88조(등록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과오납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1.1.7.>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6.5.23.>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복학을 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신설 2011.1.7., 2016.5.23.>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단, 제1항 제5호의 경우 최종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한다. <개정 2011.1.7.>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하지 않음

## 제2절 등록금 감면·장학금 등

**제89조(등록금 감면)**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7.>

②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7.>

**제9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비조달이 곤란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장학금과 연구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1조(증명수수료)**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징수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1.5.>

## 제6장 학칙개정

**제92조(제안)** 각 부서장은 학교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안을 주관 부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공고)** 주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4조(심의.공포)** 학칙개정안은 평의원회 및 교무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부경대학교학칙, 부경대학교 대학원학칙, 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학칙,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 부경대학교국제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 다음 각 호의 학칙 부칙 중 해당조항은 이 학칙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부경대학교학칙(규정 제2호, 1996.7.6 인가) 부칙 중 제2조 및 제3조
2. 부경대학교학칙(규정 제90호, 1997.3.5 인가) 부칙 중 제2조 및 제3조
3. 부경대학교학칙(규정 제117호, 1998.7.29 인가) 부칙 중 제2조
4. 부경대학교학칙(규정 제138호, 1999.3.1 인가) 부칙 중 제2조 내지 제4조
5. 부경대학교학칙(규정 제171호, 2000.2.29 인가) 부칙 중 제3조

6. 부경대학교학칙(규정 제202호, 2001.2.28 인가) 부칙 중 제2조
7. 부경대학교학칙(규정 제282호, 2002.2.27 인가) 부칙 중 제2조, 제4조 및 제5조
8. 부경대학교학칙(규정 제311호, 2003.2.26 인가) 부칙 중 제2조
9. 부경대학교학칙(규정 제351호, 2004.2.17 인가) 부칙 중 제2조 및 제3조
10. 부경대학교대학원학칙(규정 제313호, 2003.2.26 인가) 부칙 중 제2조
11. 부경대학교대학원학칙(규정 제361호, 2004.2.26 인가) 부칙 중 제3항
12.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규정 제181호, 2000.4.1 인가) 부칙 중 제2조
13. 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학칙(규정 제146호, 1999.3.1 인가) 부칙 중 제2조
14. 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학칙(규정 제193호, 2000.9.14 인가) 부칙 중 제2조
15. 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학칙(규정 제316호, 2003.2.26 인가) 부칙 중 제2조
16. 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규정 제118호, 1998.7.29 인가) 부칙 중 제2조
17. 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규정 제165호, 1999.11.24 인가) 부칙 중 제2조
18. 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규정 제189호, 2000.8.18 인가) 부칙 중 제2조
19. 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규정 제212호, 2001.4.23 인가) 부칙 중 제2조
20. 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규정 제230호, 2001.10.17 인가) 부칙 중 제2조
21. 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규정 제319호, 2003.2.26 인가) 부칙 중 제2조
22. 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규정 제181호, 2004.2.17 인가) 부칙 중 제2조
23. 부경대학교국제대학원학칙(규정 제381호, 2004.11.15 인가) 부칙 중 제2조

② 이 학칙 시행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국문·역사학과군 국어국문학과 및 사학과” 재적생은 “국어국문학과 및 사학과” 재적생으로, 공과대학의 “화상정보공학부 사진정보공학전공” 재적생은 “화상정보공학부 이미지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으로, “안전·시스템경영공학과군 안전공학과 및 시스템경영공학과” 재적생은 “시스템경영공학과와 안전공학부의 안전시스템전공 및 소방방재시스템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야간 모집단위(법·행정학과군의 법학과, 응용화학공학부, 전기·제어계측공학부) 재적생은 2007학년도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8학년도부터는 통합된 모집단위(전공)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또는 학과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구 규정의 준용)** 이 학칙 시행일 현재 재적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수업연한 및 휴학기간은 해당 대학원의 종전 학칙을 준용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학칙에 의해 제정된 부경대학교 학칙시행세칙, 부경대학교대학원학위수여규정, 부경대학교산업대학원학위수여규정,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학위수여규정, 부경대학교경영대학원학위수여규정, 부경대학교국제대학원학위수여규정 및 기타 부경대학교 제규정 등은 이 학칙에 의해 각각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10.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 별표 1 내지 별표 3과 제69조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 야간 “경제학 전공” 재적생은 “비즈니스.금융경제전공” 재적생으로, 자연과학대학의 “자연과학과군” 재적생은 “물리화학과군 및 미생물학과” 재적생으로, 경영대학의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재적생은 “e-비즈니스전공” 재적생으로, 공과대학의 전기.제어계측공학부 “전기정보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전공” 재적생은 전기.제어공학부 “전기정보공학전공, 제어자동화공학전공” 재적생으로, 기계공학부 “기계설계.생산자동화공학전공, 냉동공조.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자동화정보공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기계공학전공, 냉동공조공학전공, 지능기계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수산과학대학의 식품생명공학부 “식품생명과학전공” 재적생은 “영양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수산과학대학의 “해양생산학과군” 재적생은 2008학년도 까지 동 학과군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9학년도부터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수산경영학과” 재적생은 “해양산업경영학과” 재적생으로, “응용지질학과” 재적생은 “환경지질학과” 재적생으로, “전자계산학과” 재적생은 “정보공학과” 재적생으로, “산업공학과” 재적생은 “시스템경영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의 경영학과 “정보관리전공” 재적생은 “e-비즈니스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⑤ 이 학칙 제69조 별표 5의 해양생산시스템공학과 및 해양생산관리학과의

학위(이학사)는 2005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⑥ 이 학칙 제6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간학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공과대학의 신소재공학부 야간 “재료공학전공” 재적생은 2008학년도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9학년도부터 통합된 모집단위(전공)에 재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 또는 학과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일반대학원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3.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 “비즈니스.금융경제전공” 야간 재적생은 2008학년도까지 동 학부 “경제학전공”야간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9학년도부터 “비즈니스.금융경제전공” 야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8.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정치·언론학과군” 재적생은 “정치외교학과 또는 신문방송학과” 재적생으로, 환경·해양대학 지구환경과학과군의 “환경지질과학과”와 환경대기 및 위성정보과학과군의 “환경대기과학과, 위성정보과학과” 재적생은 환경지질·대기·위성정보과학과군의 “환경지질과학과, 환경대기과학과, 위성정보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고분자공학과” 재적생은 “청정화학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재적생으로, “공업화학학과” 재적생은 “청정화학공학부 공업화학전공” 재적생으로, “화학공학과” 재적생은 “청정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재적생으로, “어병학과” 재적생은 “수산생명의학과” 재적생으로, “국제지역·통상학연산협동과정” 재적생은 “국제지역학연산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2007. 1. 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7조제1항의 개정학칙은 2008.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조항은 2008년도 3월1일부터, 제64조제3항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식품공학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식품생명과학 전공자에게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영양학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일반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기계공학부 기계설계학전공” 재적생은 “기계설계공학과” 재적생으로, “기계공학부 설계생산자동화공학전공” 재적생은 “생산자동화공학과” 재적생으로, “기계공학부 지능기계공학전공” 재적생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재적생으로, “기계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패션매니지먼트학연산협동과정”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특수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전자공학과” 및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로, “공업화학” 및 “화학공학과”, “고분자공학과” 재적생은 “응용화학공학과” 재적생으로, “인쇄공학과” 및 “사진정보공학과” 재적생은 “인쇄및사진정보공학과” 재적생으로, “기계설계학과” 재적생은 “기계공학과” 재적생으로, “정밀기계공학과” 재적생은 “자동차공학과” 재적생으로, “건설공학과” 재적생은 “토목공학과” 재적생으로, “선박기관학과” 재적생은 “기계시스템및조선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의 폐지되는 “세무관리전공” 및 “관광경영전공”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4. 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부경대학교의 학칙 하위 규정 중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중등교육연수원”은 “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3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전기정보공학전공” 소속학생은 “전기공학전공” 소속 학생으로 본다.

부칙 <2008. 10.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5의 개정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간학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야간 모집단위인 경제학부 “비즈니스.금융경제전공” 재적생과 “행정



학과” 재적생은 2011학년도까지 동 학과(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12학년도부터 통합된 모집단위(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모집단위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화학과의” 재적생은 “물리학과” 또는 “화학과” 재적생으로, 환경·해양대학의 지구환경과학과의 “환경탐사공학과” 재적생은 “에너지자원공학과”에 재적생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법·행정학과군 법학과 및 행정학과” 재적생은 “법학과 및 행정학과” 재적생으로, 공과대학의 “화상정보공학부” 재적생은 “인쇄정보및이미지시스템공학과군” 재적생으로, “화상정보공학부 인쇄정보공학전공” 재적생은 인쇄정보및이미지시스템공학과군의 “인쇄정보공학과” 재적생으로, “화상정보공학부 이미지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은 인쇄정보및이미지시스템공학과군의 “이미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소속 “재료공학전공”, “금속시스템공학전공”, “소재프로세스공학전공”의 2008학년도 이전 학번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과 산업대학원의 “환경탐사공학과” 재적생은 “에너지자원공학과” 재적생으로, 일반대학원의 “환경대기과학과의” 재적생은 “지구환경과학부 환경대기과학전공” 재적생으로, “환경지질과학과의” 재적생은 “지구환경과학부 환경지질과학전공” 재적생으로, “위성정보과학과의” 재적생은 “지구환경과학부 위성정보과학전공” 재적생으로, 교육대학원의 “교육행정전공” 재적생은 “교육행정 및 교육방법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4조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조항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간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2006학년도 이전 야간 모집단위인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야간) 입학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09. 9. 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영어영문학부” 재적생은 “영어영문학과” 재적생으로, “국제지역학부” 재적생은 “북미전공 또는 유럽전공 또는 동북아전공” 재적생으로, 국제지역학부 “북미전공, 유럽전공, 동북아전공”의 2009학년도 이전 학번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학부 “비즈니스.금융경제전공” 재적생은 2012학년도 부터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재적생으로, “일어일문학부”의 2009학년도 이전 학번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재적생은 “응용수학과” 또는 “통계학과” 재적생으로, 수리과학부 “응용수학전공, 통계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응용수학과, 통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의 “전기.제어공학부” 재적생은 “전기공학과” 또는 “제어계측공학과” 재적생으로, 전기.제어공학부 “전기공학전공, 제어자동화공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전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재적생으로,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또는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재적생으로,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및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전공”의 2009학년도 이전 학번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기계공학부” 재적생은 “기계공학과” 또는 “냉동공조공학과” 또는 “기계자동차공학과” 또는 “기계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기계공학부 “기계공학전공, 냉동공조공학전공, 지능기계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기계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응용화학공학부” 재적생은 “화학공학과 또는 공업화학과 또는 고분자공학과” 재적생으로, 응용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고분자공학과” 재적생으로, “신소재공학부” 재적생은 “신소재공학부” 또는 “금속공학과” 재적생으로, 2008학년도 이전 학번의 신소재공학부 “금속시스템공학전공” 재적생은 “금속공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인쇄정보 및 이미지시스템공학과군” 재적생은 “인쇄정보공학과” 또는 “이미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인쇄정보및이미지시스템공학과군 “인쇄정보공학과” 재적생은 “인쇄정보공학과” 재적생으로, 인쇄정보및이미지시스템공학과군 “이미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이미지

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당시 수산과학대학의 “식품생명공학부” 재적생은 “식품공학과” 또는 “식품영양학과” 또는 “생물공학과” 재적생으로, 식품생명공학부 “식품공학전공, 영양학전공, 생물공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물공학과” 재적생으로, “수산해양생명과학과군” 재적생은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또는 “자원생물학과” 재적생으로, 수산해양생명과학과군 “양식학과, 자원생물학과” 재적생은 각각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자원생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⑤ 이 학칙 시행 당시 환경·해양대학의 “환경시스템공학부” 재적생은 “환경공학과” 또는 “생태공학과” 재적생으로, 환경시스템공학부 “환경공학전공, 생태공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환경공학과, 생태공학과” 재적생으로, “지구환경과학과군” 재적생은 “해양학과” 또는 “에너지자원공학과” 재적생으로, 지구환경과학과군 “에너지자원공학과, 해양학과” 재적생은 각각 “에너지자원공학과, 해양학과” 재적생으로, “해양공학및조선공학과군” 재적생은 “해양공학과” 또는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해양공학및조선공학과군 “해양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각각 “해양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환경지질·대기·위성정보학과군” 재적생은 “지구환경과학과” 또는 “환경대기과학과” 또는 “위성정보과학과” 재적생으로, 환경지질·대기·위성정보학과군 “환경지질과학과, 환경대기과학과, 위성정보과학과” 재적생은 각각 “지구환경과학과, 환경대기과학과, 위성정보과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야간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공과대학 인쇄정보 및 이미지시스템공학과군 “인쇄정보공학과” 야간 재적생은 2012학년도 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13학년도부터 통합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청정화학공학부(공업화학전공)” 재적생은 “공업화학과” 재적생으로, “청정화학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재적생은 “고분자공학과” 재적생으로, “청정화학공학부(화학공학전공)” 재적생은 “화학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조항은 2010년 4월 1일부터, 제62조의 개정 조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사과정의 학점신청 및 이수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학칙 제53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의 개정조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편입생은 2012학년도), 제68조의 개정조항은 2012학년도 편입생부터, 제60조 개정조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편입생포함)부터 적용하고 2011년 3월 1일부터 전체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부칙 <2010. 4. 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의 개정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의 “안전공학부” 재적생은 “안전공학과” 또는 “소방공학과” 재적생으로, 안전공학부 “안전시스템전공, 소방방재시스템전공” 재적생은 각각 “안전공학과, 소방공학과” 재적생으로,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재적생은 “건축학과” 재적생으로,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재적생은 “건축공학과” 재적생으로, “건설공학부” 재적생은 “토목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수산과학대학의 “해양산업경영학부” 재적생은 “해양산업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환경.해양대학의 “위성정보과학과” 재적생은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정보공학과” 재적생은 “IT융합응용공학과” 재적생으로, “자원경제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간학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2005학년도 이전 야간 모집단위인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재적생, 2006학년도 이후 야간 모집단위인 경제학부 비즈니스·금융경제전공 재적생은 2012학년도부터 주간 모집단위인 경제학부 경제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 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 이전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지역학부 “북미전공, 유럽전공” 재적생은 각각 “북미학전공, 유럽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대학원의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지질과학전공” 재적생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지구환경과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3”, “별표 5”의 개정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재적생은 “시각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디자인학부

공업디자인전공” 재적생은 “공업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재적생은 “패션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의 “경영학부 e-비즈니스전공” 재적생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재적생으로, “경영학부 회계·재무시스템전공” 재적생은 “경영학부 회계·재무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의 “신소재공학부” 재적생은 “재료공학과” 또는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2008학년도 이전 학번의 신소재공학부 “재료 공학전공” 재적생은 “재료공학과” 재적생으로, 신소재공학부 “소재프로세스공학전공” 재적생은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시스템경영공학과” 2011학년도 이전 학번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소재프로세스공학과” 재적생은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지구환경 시스템과학부 위성정보과학전공” 재적생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공간정보시스템 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의 “경제학과 부동산금융경제전공” 재적생은 “경제 학과 부동산·금융경제전공” 재적생으로, “경영학과 패션비즈니스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대학원의 “영상학과” 재적생은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12. 3. 12.>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의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이 대학교 제 규정의 내용중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9.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경대학교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학생지원과장”을 “학생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부경대학교 교통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 7인”을 “위원 6인”으로 하고, 제2항 중 “대외사업본부장”을 “사무국장”으로, “기획정책연구위원회”을 “기획부처장”으로, “발전연구위원회”을 “부학장”으로 하고, “사업관리부장”과 “제3항”을 삭제하며, 제5항 중 “사업관리부 팀장”을 “서무팀장”으로 하며, 제11조 “대외사업본부 사업관리부”를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③ 부경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홍보협력과”를 “대외협력과”로, “경리과”를 “재무과”로 한다.

④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5의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80조, 제94조제3호 중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을 “부총장”으로, “정책연구위원회”을 “부처장”으로, “발전연구위원회”을 “부학(원)장”으로 한다.

⑤ 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학무부총장, 대외부총장”을 “부총장”으로, “국제교류원장”을 “국제교류본부장”으로, “교양·교육개발원장”을 “대학교육개발원장”으로, “언어교육원장”, “법률지원센터소장”, “해양과학공동연구소장”, “대외사업본부장”은 삭제하며, 별표 1의 책임시간 6시간 보직명에 “부처장”, “부학장”, “국제교류본부장”을 추가한다.

⑥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사과정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무정책연구위원회”을 “교무부처장”으로 한다.

⑦ 부경대학교 해외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국제교류센터소장”을 “국제교류본부장”으로 한다.

⑧ 부경대학교 학생단체활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생지원과”를 “학생복지과”로 한다.

⑨ 부경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학생지원과장”을 “학생복지과장”으로 한다.

- ⑩ 부경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각종 상담 및 검사”, 제3조제3항 중 “학생상담센터”를 삭제하며, 제4장 “학생상담센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발전연구위원회”을 “부학장”으로 한다.
- ⑪ “부경대학교 교양·교육개발원 규정”을 “부경대학교 대학교육개발원 규정”으로 하고,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양.교육개발원”을 “대학교육개발원”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교무)”를 “교무부처장”으로 한다.
- ⑫ 부경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학생지원과장”을 “학생복지과장”으로, “경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 ⑬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해양탐구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중 “발전연구위원회”을 “부학장”으로 한다.
- ⑭ 부경대학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생지원”을 “학생복지”로 한다.
- ⑮ 부경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무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 ⑯ 부경대학교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항, 제4항 중 “교양·교육개발원장”을 “대학교육개발원장”으로, “정책연구위원(교무·학생)”을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으로, “발전연구위원”을 “부학장”으로 한다.
- ⑰ 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학무부총장”을 “부총장”으로 한다.
- ⑱ 부경대학교 국제화 역량강화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중 “학무부총장”을 “부총장”으로, “국제교류원장”을 “국제교류본부장”으로, “정책연구위원(교무.학생.기획.홍보협력)”을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으로, “단과대학발전연구위원”을 “단과대학부학장”으로 하고 “언어교육원장”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제교류원”을 “국제교류본부”로 한다.
- ⑲ 부경대학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학생지원과장”을 “학생복지과장”으로 한다.
- ⑳ 부경대학교 캠퍼스기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제제2항 중 “정책연구위원회(교무, 학생, 기획)”을 “교무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으로, “단과대학 발전연구위원회”을 “단과대학 부학장”으로, “경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㉑ 부경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중 “교무정책연구위원회”을 “교무부처장”으로 한다.

㉒ 부경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발전연구위원회”을 “부학장”으로 하고, “대외사업본부장”은 삭제한다.

㉓ 부경대학교 학생장학지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책연구위원회(학생)”을 “학생부처장”으로, “학생지원과장”을 “학생복지과장”으로 한다.

㉔ 부경대학교 체육진흥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학생지원과장”을 “학생복지과장”으로 한다.

㉕ 부경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 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학생정책연구위원회”을 “학생부처장”으로, “교무정책연구위원회”을 “교무부처장”으로, “학생과장”을 “학생복지과장”으로, “발전연구위원회”을 “부학장”으로 한다.

㉖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외지원부장”을 삭제하고, “기획정책연구위원회”을 “기획부처장”으로, “발전연구위원회”을 “부학장”으로 한다.

㉗ 부경대학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 중 “교양·교육개발원”을 “대학교육개발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부경대학교 국제교류원 규정”, “부경대학교 언어교육원 규정”, “해양과학공동연구소 규정”, “부경대학교 법률상담센터 규정” 및 “부경대학교 기획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항”, “제60조 제6항”,

“제61조”,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자율삭제 신청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전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까지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디자인학부 ” 재적생은 “시각디자인학과” 또는 “공업디자인학과” 또는 “패션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의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은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전공” 또는 “전자공학과” 또는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로,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재적생은 “전자공학과” 또는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조선시스템관리공학협동과정” 및 “기계부품소재학협동과정”의 재적생은 “지도교수가 소속된 일반과정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의 “경영학과 e-비즈니스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재적생은 “경영학과” 재적생으로, “경제학과 노동관계전공” 재적생은 “경제학과 경제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의 “교육심리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소재프로세스공학과” 재적생은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공간정보공학과”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생물자원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수산대학원의 생물자원학과” 재적생으로, “수산양식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수산대학원의 양식학과” 재적생으로, “어업생산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수산대학원의 어업생산학과” 재적생으로, “생물산업공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수산대학원의 생물산업공학과” 재적생으로, “식품산업공학과” 재적생은 “글로벌수산대학원의 식품산업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⑥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산업대학원의 “생물자원학과”, “수산양식학과”, “어업생산학과”, “생물산업공학과”, “식품산업공학과”에서 제적된 학생은 글로벌수산대학원 동 학과에 재입학 할 수 있다.

부칙<2013. 4. 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 대학원의 “생산자동화공학과” 및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기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재적생은 “글로벌수산대학원의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반대학원의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에서 제적된 학생은 글로벌수산대학원 동 학과에 재입학할 수 있다.

부칙<2013. 9. 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경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창업·취업지원센터”를 “취업지원센터”로 하며, 제24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부경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의 부서별 전결권 구분표의 내용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창업·취업지원센터”를 “취업지원센터”로, “창업·취업”을 “취업”으로 한다.

③ 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의 보직교원 책임시간 중 “종합인력개발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창업·취업지원센터장”을 “취업지원센터장”으로 한다.

④ 부경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의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은 “IT융합응용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또는 “전자공학과” 또는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로,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재적생은 “IT융합응용공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수산과학대학의 “해양산업경영학과 ” 재적생은 “해양수산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재적생은 “기계설계공학과” 재적생으로, “환경공학과” 재적생은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환경공학전공)” 재적생으로, “해양산업경영학과” 재적생은 “해양수산경영학과” 재적생으로, “소방방재공학협동과정” 재적생은 “소방공학과” 재적생으로, “패션디자인학협동과정” 재적생은 “패션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음향진동공학협동과정” 및 “첨단정보과학및정보기술국제화협동과정” 재적생은 “지도교수가 소속된 일반과정 학과” 재적생으로, “LED공학협동과정” 재적생은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 LED융합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일반대학원의 “LED공학협동과정”에서 제적된 학생은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 “LED융합공학전공”에 재입학 할 수 있다.

부칙<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학과 편입학의 총학생수에 관한 경과조치)** 학칙 제37조제2항의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편입학 총학생수는 2014학년도 편입학 전형까지는 종전의 학칙에 따른다.

부칙<2014.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6조제4항”, “제9조제3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학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9.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 “별표 5” , 부칙 “제2조” 및 “제3조” 의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의 “기계자동차공학과” 재적생은 “기계설계공학과” 재적생으로, “이미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이미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재적생으로, “생명의학융합공학과” 재적생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재적생으로, “의생명융합공학협동과정” 재적생은 “의생명기계전기융합공학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산업미생물학과” 재적생은 “미생물학과” 재적생으로, “기계자동차공학과” 재적생은 “기계설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대학원의 “교육행정 및 교육방법전공”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환경·해양대학의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공과대학의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지식재산학협동과정” 재적생은 “지도교수가 소속된 일반과정 학과” 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15.3.1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4.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 “별표 5”

및 부칙 “제2조”의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고분자공학과” 재적생은 “화학융합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재적생으로, “공업화학과” 재적생은 “화학융합공학부(공업화학전공)” 재적생으로, “화학공학과” 재적생은 “화학융합공학부(화학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15.6.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국제지역학부” 재적생은 “유럽북미학전공 또는 중국학전공” 재적생으로 보며, 국제지역학부 “북미학전공, 유럽학전공”의 2015학년도 이전 학번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수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의 “마린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은 “산업디자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대학원의 “미국학과” 재적생은 “국제학과” 재적생으로, “행정학과” 재적생은 “행정학부 공공관리학전공” 재적생으로, “한국문화학과” 재적생은 “문화학부 한국문화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제859호, 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부칙 “제2조”의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의 국제통상물류학과 “국제통상전공, 해운항만관리전공, 국제경영전공” 및 경제학과 “부동산·금융경제전공, 경제학전공”의 재적생은 졸업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0호, 2015.12.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호, 2016.3.3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별표 5”의 개정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 2016.5.23., 제904호, 2016.1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영어영문학과” 재적생은 “영어영문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지역학부” 재적생은 “국제학전공” 또는 “국제개발협력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 학번의 국제지역학부 “동북아전공”, “북미학전공”, “유럽학전공”, “유럽북미학전공”, “중국학전공”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제지역학부의 “국제개발협력학전공”, “국제학전공” 또는 “중국학과”로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당시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국제지역학부 재적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제지역학부의 “국제학전공”, “국제개발협력학전공” 또는 “중국학과”로 전공을 선택한다. <신설 2016.12.1>

부칙 <제891호, 2016.7.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학칙과 “별표 5”의 국제개발학사과정의 해양수산국제개발협력연계전공을 제외한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 2016.10.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의 별표 2, 별표 3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제어기계공학과” 재적생은 “기계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1호, 2016.11.4>

이 학칙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7호, 2016.1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 2017.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 2017.6.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단과대학란의 미래융합대학은 제외한다) 및 별표 5의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 학생 정원표 개정에 따른 전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수산식품냉동공학과’ 및 ‘자동차응용공학과’ 재적생은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또는 ‘평생교육·상담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3항 중 “평생교육단과대학” 을 “미래융합대학”으로 한다.
2. 제5조제9항 중 “평생교육단과대학” 을 각각 “미래융합대학”으로 한다.
3. 제8조제3항 중 “평생교육단과대학” 을 “미래융합대학”으로 한다.
4. 제9조제3항 중 “평생교육단과대학” 을 “미래융합대학”으로 한다.
5. 제37조제3항 중 “평생교육단과대학” 을 각각 “미래융합대학”으로 한다.
6. 제49조제2항 중 “평생교육단과대학” 을 각각 “미래융합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954호, 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응용경제학과 재적생은 자원환경경제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제966호, 2018.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18.6.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3항의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칙을 적용받고 있는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박사과정 편입생에 대하여는 제64조제3항의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984호, 2018.7.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1호, 2018.8.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 2018.9.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호, 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의 “LED융합공학전공” 재적생은 일반대학원의 “LED공학협동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된 과학기술융합전문대학원 “LED융합공학전공”에서

제적된 학생은 일반대학원 “LED공학협동과정”에 재입학 할 수 있다.

부칙 <제998호, 2018.11.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 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총장”을 “학무부총장”, “산학부총장”으로 한다.

②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총장”을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③ 부경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총장”을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④ 부경대학교 연구비 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총장”을 “산학부총장”으로 한다.

⑤ 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총장”을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⑥ 부경대학교 해외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총장”을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⑦ 부경대학교 국제화역량강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부총장”을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⑧ 부경대학교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총장”을 “학무부총장”으로 한다.

부칙 <제1007호, 2019.1.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별표3의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의

“글로벌금융협동과정(석사과정)” 재적생은 “지도교수가 소속된 일반과정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특수대학원 모집단위 내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경영대학원 모집단위 경제학과 내 “비즈니스경제전공”의 재적생은 졸업 시 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3호, 2019.2.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호, 2019.2.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대학원 모집단위 내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글로벌수산대학원 “글로벌해양수산학과”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25호, 2019.5.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국제대학원”을 각각 “글로벌정책대학원”으로 한다.

②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교무 규정」의 제목을 「부경대학교 글로벌정책대학원 교무 규정」으로 하고,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국제대학원”을 “글로벌정책대학원”으로 한다.
2. 제2조 중 “국제대학원위원회”를 “글로벌정책대학원위원회”로 하고, “국제대학원장”을 “글로벌정책대학원장”으로 한다.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 중 “국제대학원”을 각각 “글로벌

정책대학원” 으로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1호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를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olicy Studies” 로 한다.

③ 「부경대학교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직교원 책임시간 중 “국제대학원장” 을 “글로벌정책대학원장” 으로 한다.

부칙 <제1033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대학원 모집단위 내 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글로벌수산대학원 “생물산업공학과” 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4호, 2019.8.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으로 “자원·정보경제학 전공” 소속학생은 “자원환경경제학전공” 소속 학생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경대학교 캠퍼스기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직교원” 을 “전임교원” 으로 한다.

② 「부경대학교 연구소(센터) 설립 및 폐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교원” 을 “전임교원” 으로 한다.

③ 「부경대학교 표창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교직원” 을 “전임교원 및 직원” 으로 한다.

④ 「부경대학교 대학회계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교직원”을 “전임교원, 공무원조교, 공무원직원, 대학회계 호봉제적용 정규직원”으로 한다.

⑤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시간강사”를 “강사”로, 제46조제3항제4호 중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한다.

⑥ 「부경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직원”을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한다.

⑦ 「부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8조제1항 중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한다.

⑧ 「부경대학교 신산학융합본부 인재개발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교직원”을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한다.

⑨ 「부경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직원”을 “전임교원 및 직원”로 한다.

⑩ 「부경대학교 도서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제22조제2호 중 “직원, 조교, 대학원생”을 “직원, 조교, 대학원생, 겸임교원 등 및 강사”로 한다.

⑪ 「부경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교직원”을 “전임교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한다.

⑫ 「부경대학교 생활관비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직원”을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제3조제2항 중 “교직원”을 “전임교원”으로 한다.

⑬ 「부경대학교 부경언론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6조제2항 중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한다.

⑭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7조제2항 중 “교원” 을 “전임교원” 으로 한다.

⑮ 「부경대학교 해양탐구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원” 을 “전임교원” 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3.2.12., 2013.11.20., 2014.9.26., 2014.12.30., 2015.10.5., 2016.5.23., 2016.7.5., 2017.7.10., 2018.10.16., 2019.8.1.>

### 대학 학생 정원표

단과대학	학부(과)	2020학년도 입학정원	2019학년도 입학정원	2018학년도 입학정원	2017학년도 입학정원	2016학년도 입학정원
인문사회 과학대학	<b>15개</b> (11개 학과, 4개 학부<8개 전공>) 학부(과)	<b>682</b>	682	682	682	693
	국어국문학과	<u>30</u>	30	30	30	30
	영어영문학과	-	-	-	-	70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미국학전공)	<u>69</u>	69	69	69	
	일어일문학부 (일본어문학전공, 일본학전공)	<u>69</u>	69	69	69	70
	사학과	<u>30</u>	30	30	30	30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자원환경경제학전공)	<u>104</u>	104	104	104	105
	법학과	<u>68</u>	68	68	68	69
	행정학과	<u>68</u>	68	68	68	69
	국제지역학부 (북미학전공, 유럽학전공, 중국학전공)	-	-	-	-	-
	국제지역학부 (유럽북미학전공, 국제개발협력학전공, 중국학전공)	-	-	-	-	90
	국제지역학부 (국제학전공, 국제개발협력학전공)	<u>57</u>	57	57	57	-
	중국학과	<u>29</u>	29	29	29	-
	신문방송학과	<u>30</u>	30	30	30	30
	정치외교학과	<u>24</u>	24	24	24	24
	유아교육과	<u>20</u>	20	20	20	20
	시각디자인학과	<u>25</u>	25	25	25	25
	공업디자인학과	<u>25</u>	25	25	25	25
	패션디자인학과	<u>34</u>	34	34	34	36
자연과학 대학	<b>7개</b> 학과	<b>267</b>	267	267	267	278
	응용수학과	<u>37</u>	37	37	37	40
	통계학과	<u>30</u>	30	30	30	30
	물리학과	<u>43</u>	43	43	43	44
	화학과	<u>43</u>	43	43	43	44
	미생물학과	<u>37</u>	37	37	37	40
	해양스포츠학과	<u>37</u>	37	37	37	40
	간호학과	<u>40</u>	40	40	40	40

단과대학	학부(과)	2020학년도 입학정원	2019학년도 입학정원	2018학년도 입학정원	2017학년도 입학정원	2016학년도 입학정원
경영대학	2개 학부(6개 전공)	253	253	253	253	255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회계, 재무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155	155	155	155	156
	국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국제무역물류학전공, 국제경영학전공)	98	98	98	98	99
공과대학	26개 (25개 학과, 1개학부<2개 전공>) 학부(과)	1,359	1,359	1,359	1,359	1,407
	전기공학과	62	62	62	62	63
	제어계측공학과	46	46	46	46	47
	전자공학과	78	78	78	78	79
	정보통신공학과	47	47	47	47	48
	컴퓨터공학과	56	56	56	56	58
	IT융합응용공학과	67	67	67	67	68
	기계공학과	75	75	75	75	76
	냉동공조공학과	46	46	46	46	47
	기계자동차공학과	-	-	-	-	-
	기계설계공학과	80	80	80	80	81
	기계시스템공학과	42	42	42	42	45
	화학공학과	64	64	64	64	65
	공업화학과	47	47	47	47	48
	고분자공학과	47	47	47	47	48
	인쇄정보공학과	54	54	54	54	60
	이미지시스템공학과	-	-	-	-	-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61	61	61	61	62
	시스템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기술·서비스공학전공)	57	57	57	57	60
	안전공학과	38	38	38	38	40
	소방공학과	38	38	38	38	40
	금속공학과	39	39	39	39	40
	재료공학과	48	48	48	48	49
	신소재시스템공학과	48	48	48	48	49
	건축공학과<4년>	40	40	40	40	42
	건축학과<5년>	41	41	41	41	42
	토목공학과	63	63	63	63	70
	의공학과	38	38	38	38	40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37	37	37	37	40



단과대학	학부(과)	2020학년도 입학정원	2019학년도 입학정원	2018학년도 입학정원	2017학년도 입학정원	2016학년도 입학정원
수산과학 대	<b>9개</b> (8개 학과, 1개 학부<2개 전공>) 학부(과)	<b>342</b>	342	342	342	357
	식품공학과	<b>41</b>	41	41	41	42
	식품영양학과	<b>37</b>	37	37	37	40
	생물공학과	<b>37</b>	37	37	37	40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해양생산학전공, 해양경찰학전공)	<b>57</b>	57	57	57	60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b>43</b>	43	43	43	44
	자원생물학과	<b>37</b>	37	37	37	40
	수산생명의학과	<b>30</b>	30	30	30	30
	수해양산업교육과 (기관공학전공, 냉동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양식공학전공, 어업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b>15</b>	15	15	15	15
	해양산업경영학과	-	-	-	-	-
	해양수산경영학과	<b>45</b>	45	45	45	46
환경. 해양대학	<b>8개 학과</b>	<b>281</b>	281	281	281	300
	환경공학과	<b>37</b>	37	37	37	40
	생태공학과	<b>30</b>	30	30	30	30
	해양학과	<b>37</b>	37	37	37	40
	에너지지원공학과	<b>30</b>	30	30	30	30
	해양공학과	<b>37</b>	37	37	37	40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	-	-	-	-
	지구환경과학과	<b>37</b>	37	37	37	40
	환경대기과학과	<b>37</b>	37	37	37	40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b>36</b>	36	36	36	40
미래융합 대학	<b>4개 학과</b>	<b>60</b>	60	60	60	0
	평생교육·상담학과	<b>30</b>	30	30	24	
	수산식품냉동공학과	-	-	-	10	
	기계조선융합공학과	<b>10</b>	10	10	10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b>10</b>	10	10	10	
	자동차응용공학과	-	-	-	6	
	공공안전경찰학과	<b>10</b>	10	10		
	글로벌자율전공학부	<b>26</b>	26	26	26	30
	합 계 【72개 (63개 학과, 9개 학부<18개 전공>) 학부(과)】	<b>3,270</b>	3,270	3,270	3,270	3,320

[별표 2] <개정 2013.2.12., 2013.8.21., 2013.11.20., 2014.2.28., 2014.6.23., 2014.9.26., 2014.12.30., 2015.04.30., 2015.11.13., 2015.12.23., 2016.3.31., 2016.10.17., 2016.12.28., 2017.10.17., 2018.6.1., 2018.10.16., 2019.2.28.>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생 정원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가나다순>

과정	계열	학 과	정원	과정	계열	학 과	정원
일반 과정	인문 사회 (16)	경제학 언어학 국어학 국문학 국제정치학 국제법학 사신영 윤리 일어 자원 지리 지구 생태 환경 영양 행정		일반 과정	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생체공학 제조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해양공학 화학공학 융합공학 IT융합공학	화학공학 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융합공학
	자연 과학 (14)	가설 물리 미생물 수생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수산			예체능 (3)	산업디자인학과 체육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공학 (29)	건축공학 건축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냉동공조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 생태공학 소방공학 시스템경영공학 식품공학 신소재시스템공학 안전공학 에너지융합공학			학과간 (18)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경영건설협동과정 교육건설협동과정 글로벌지역학협동과정 기술경영협동과정 나노과학협동과정 마린융합디자인협동과정 무기체계공학협동과정 에너지소재및공학협동과정 의생명기계전기융합공학협동과정 인공지능컴퓨터전자기계공학협동과정 정보보호학협동과정 정보시스템협동과정 해양산업공학협동과정 행정공간정보화학협동과정 LED공학협동과정 NT융합광전자시스템공학전공 U-Eco City 협동과정	
협동 과정				학연산 (9) [협약기관]	공학계열 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세라믹기술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전기연구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정책협동과정 기계공학학연협동과정 수로화학학연협동과정		
		합 계				83개 학과(부), 6개 연구원	473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가나다순>

과정	계열	학 과	정원	과정	계열	학 과	정원
일반 과정	인문 사회 (16)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어국문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통상물류학과 법학과 사학과 신문방송학과 영어영문학과 유아교육학과 일어일문학과 자원환경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중국학과 해양수산경영학과 행정학과		일반 과정	공학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공학과 화학융합공학부(고분자공학전공, 공업화학전공, 화학공학전공) IT융합응용공학과	
	자연 과학 (14)	간호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수산물리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수산생물학과 수해양인적자원개발학과 식품생명과학과 응용수학과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공간정보 시스템공학전공, 지구환경과학전공, 환경대기과학전공, 환경공학전공) 통계학과 해양생물학과 해양학과 화학과	예체능 (3)			산업디자인학과 체육학과 패션디자인학과	
				협동 과정	학과간 (18)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경영건설팅협동과정 교육건설팅협동과정 글로벌금융협동과정 글로벌지역학협동과정 기술경영협동과정 나노과학협동과정 마린융합디자인협동과정 무기체계공학협동과정 에너지소재및공정협동과정 의생명기계전기융합공학협동과정 인공지능컴퓨터전자기계공학협동과정 정보보호학협동과정 정보시스템협동과정 해양산업공학협동과정 행정공간정보화협동과정 LED공학협동과정 NT융합광전자시스템공학전공	
공학 (28)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소방공학과 생물공학과 생태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과 식품공학과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인쇄공학과	학연산 (9) [협약기관]	공학계열 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세라믹기술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전기연구원] 공학계열 학과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정책협동과정 기계공학학연협동과정 수로화학연협동과정				
합 계						82개 학과(부), 6개 연구원	224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전문대학원	학 과 및 전 공	학과 (전공)수	입학 정원(명)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1개 학과	34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문대학원	학 과 및 전 공	학과 (전공)수	입학 정원(명)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1개 학과	5

(별표 3) <개정 2013.2.12., 2013.8.21., 2013.11.20., 2014.9.26., 2015.10.5., 2015.11.13., 2016.10.17., 2017.2.28., 2019.01.17., 2019.2.28., 2019.5.7. 2019.6.21.>

### 특수대학원 학생 정원표

특수대학원	학 과 및 전 공	학과 (전공)수	입학 정원(명)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신소재시스템공학과, 기계시스템및조선공학과, 안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산정보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해양개발학과, 환경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미생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건축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소방공학과, 임상영양학과	25개 학과	106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컨설팅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수산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일어교육전공, 디자인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아동심리및상담전공, 초등영어교육전공, 유아교육전공, 초등수학교육전공,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1개 학과 20개 전공	200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국제통상물류학과, 경제학과(금융부동산경제전공), 세무관리학과, 관광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6개 학과 1개 전공	130
글로벌정책 대학원	일본학과, 중국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정치언론학과, 국제학과, TESOL학과, 행정학부(공공관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문화학부(한국문화학전공, 문학치료학전공), 글로벌한국학협동과정, 경찰학협동과정	8개 학과 2개 학부 4개 전공	70
글로벌수산 대학원	국제수산과학협동과정, 생물자원학과, 식품산업공학과, 양식학과, 어업생산학과, 해양경영정책학과	6개 학과	28
세계수산 대학원	수산학부(양식기술전공, 수산자원관리전공, 사회과학전공)	1개 학부 3개 전공	3

(별표 4) <개정 2013.9.11., 2014.2.28., 2014.9.26., 2015.04.30.>(삭제, 2016.12.28.)

[별표 5] <개정 2013.11.20., 2014.7.9., 2014.9.26., 2015.04.30., 2015.10.5. 2016.3.31., 2016.5.23., 2016.7.5., 2017.7.10., 2018.6.1., 2018.9.14., 2018.10.16.>

### 학사학위 수여표

학 위 명	학부(과).전공 <가나다순>	비 고
국제지역학사	국제개발협력학전공, 국제학전공, 동북아전공, 북미학전공, 유럽북미학전공, 유럽학전공, 중국학과, 중국학전공	
국제개발학사	해양수산국제개발협력연계전공	
경 제 학 사	경제학전공, 자원환경경제학전공	
정치외교학사	정치외교학과	
문 학 사	국어국문학과, 미국학전공, 사학과, 신문방송학과,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유아교육과, 일본어문학전공, 일본학전공, 일어일본학부, 중국학연계전공, 평생교육·상담학과, 한국어교육연계전공	
법 학 사	법학과	
행 정 학 사	행정학과	
디자인학사	공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이 학 사	공통과학교육연계전공, 나노·바이오특성화연계전공,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수산생명의학과, 식품영양학과, 응용수학과, 자원생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통계학과, 해양경찰학전공,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해양생산첨단산업연계전공, 해양생산학전공, 해양학과, 화학과, 환경대기과학과	
체 육 학 사	해양스포츠학과	
간 호 학 사	간호학과	
경 영 학 사	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기술창업연계전공, 해양수산경영학과, 회계.재무학전공	
상 학 사	국제경영학전공, 국제무역물류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공 학 사	건축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기계IT융합시스템공학전공,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조선융합공학과, 기술·서비스공학전공, 냉동공조공학과, 산업경영공학전공, 생물공학과, 생태공학과, 소방공학과, 수해양산업교육과(기관공학전공, 냉동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항해공학전공), 시스템경영공학과, 식품공학과, 신소재시스템공학과, 안전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융합디스플레이공학과, 의공학과, 의공학IT융합전공*, 인쇄정보공학과, 재료공학과, 전기공학과, 전기전자소프트웨어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지능형지구환경재해정보관리연계전공, 컴퓨터공학과,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전공, 토목공학과, 해양공학과, 해양환경사회기반공학연계전공,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ICT융복합기술혁신연계전공, IT융합응용공학과	
건 축 학 사	건축학과	
수 산 학 사	수해양산업교육과(양식공학전공, 어업공학전공), 해양바이오식의약연계전공, 해양식량자원개발연계전공	
경찰학사	공공안전경찰학과	
마린시스템융합 디자인공학사	마린시스템융합디자인공학연계전공	
글로벌MICE학사	동아시아환동해지역과동남권역연계MICE인재양성사업단연계전공	
영상문화콘텐츠학사	해양영상문화콘텐츠융합전공	
비즈니스외국어학사	해양기반비즈니스외국어융합전공	
기록관리학사	해양수산기록관리융합전공	

\*글로벌자율전공학부는 이수한 학부(과)의 학위 수여(건축학사 및 간호학사 제외)

\* 의공학IT융합전공은 학칙 제66조에 규정한 융합(공유)전공을 말한다.

[별표 6] <신설 2015.11.13.> <개정 2018.6.1., 2018.10.16., 2019.8.1.>

### 계약학과의 학생정원 및 학위수여 명칭

구분	대학명	과정	학부·학과·전공명		수여 학위명	입학정원				
						<a href="#">2020</a>	2019	2018	2017	2016
						편입	편입	편입	편입	편입
대 학	공과대학	학사	기계설계공학과	기계IT융합시스템 공학전공	공학사	<a href="#">20</a>	20	20	20	20

(별지 제1호 서식)

———— 30mm ————  
———— 24mm ————

제 호	마 크		
<b>졸업증서</b>			
		성 명 ○ ○ ○	
		년 월 일생	
<p>위 사람은 본교 소정의 전 과정(            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p>			
<p>년 월 일</p>			
<p>부경대학교 ○ ○ 대학장 (학위) ○ ○ ○</p>			
<p>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p>			
<p>년 월 일</p>			
<p>부경대학교총장 (학위) ○ ○ ○</p>			
<p>학위등록번호 : _____</p>			

172mm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h2>졸업증서</h2>
성 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대학 ○○학부 .학과(○○전공)에서 ○○학위와 ○○대학 ○○대학 ○○학부.학과(○○전공)에서 ○○학위의 자격을 얻 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부경대학교 ○○대학장 (학위) ○ ○ ○(인) 부경대학교 ○○대학장 (학위) ○ ○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경대학교총장(학위) ○ ○ ○(인) 학위등록번호 _____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 부 경 대 학 교 총 장

학위번호 : 부경대학교-학점-연도-일련번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 수료증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과정을 ○○학과에서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부 경 대 학 교 ○ ○ 대 학 원 장 ○○박사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 경 대 학 교 총 장 ○○박사 ○ ○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 ○ 과정 연구생으로 ○ ○ 학과에서

○ ○ 학을 년 월간 연구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장 ○ ○ 박사 ○ ○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 명 예 졸업 증 서

성 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에 입학한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는 못하였으나 ..... 하였기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경대학교총장(학위) ○ ○ ○(인)

[별지 제7호 서식] (주전공용) <신설 2016.12.28.>



*Be it known tha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is hereby conferred upon*

**영문 성명**  
*in recognition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ability to complete original research*

*Given in Busan, Korea, on (수여월일년)*

*President*

*Dean of the College of*

[별지 제8호 서식] (복수전공용) <신설 2016.12.28.>



*Be it known that*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and*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are hereby conferred upon 영문 성명*

*in recognition of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ability to complete original research*

*Given in Busan, Korea, on (수여월일년)*

*President*

*Dean of the College of*